

제254회 거창군의회의 임시회

#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거창군의회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21-6	거창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 (문화관광과)	1
2021-7	거창군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행복나눔과)	4



**거창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  
(신재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1-6
----------	--------

발의일자	2021. 1. 12.
발 의 자	신재화, 김종두, 최정환, 심재수, 권재경, 이재운, 표주숙, 김향란, 이흥희, 박수자, 권순모 의원

**1. 제안이유**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젊은 문화활동 인구의 외부 유출 방지와 지역의 문화, 상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나.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 다. 군수 및 거리공연가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라. 거리공연 장소 운영을 정함(안 제4조)
- 마. 활성화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거리공연가의 창작 및 활동,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 거리 공연 장소의 지정·운영, 상설화를 위한 사업 및 홍보,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 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사. 질서유지 관리원 배치를 정함(안 제7조)
- 아. 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을 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문화기본법, 공연법, 공원녹지법, 소음·진동 관리법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1. 1. 12. ~ 1. 18.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젊은 문화활동 인구의 외부 유출 방지와 지역의 문화, 상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술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음악(노래·악기연주 포함), 춤, 마술, 미술, 저글링, 전시, 행위예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리공연이 활성화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활성화 사업)** 군수는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창작 및 활동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
3.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

4. 상설화를 위한 사업 및 홍보
5.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질서유지 관리원) ① 군수는 거리공연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서유지 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질서유지 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사용
2. 소음
3. 보행 방해
4. 불법 상행위
5. 환경 훼손 등

③ 질서유지 관리원의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군수는 거리공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권순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1-7
----------	--------

발의일자	2021. 1. 12.
발 의 자	권순모, 김종두, 최정환, 심재수, 권재경, 이재운, 표주숙, 김향란, 이흥희, 신재화, 박수자 의원

**1. 제안 이유**

- 거창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군수 및 사업주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지원 계획 및 사업(안 제5조)
- 라. 재정지원(안 제6조)
- 마. 업무의 위탁(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행복나눔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1. 1. 15.~ 1. 20.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계획 및 사업)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예방 및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군수가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간의 연계체계를 마련하고,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